

성 남 시 의 회 청 원 심 사 규 칙 일부개정 규칙안

의안 번호	1909
----------	------

발의년월일 : 2008. 1. 30

발 의 자 : 김해숙 의원 등 8인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전부개정(2007. 10. 4공포)됨에 따라
- 성남시의회청원심사규칙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 동 규칙 제17조(준용규정)중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를 명칭변경 개정된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 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제명 “성남시의회청원심사규칙” 을 “성남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으로 개정
- 지방자치법 시행령 조문 및 의회명 개정(안 제1조)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4조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0조」
 - 경기도 성남시의회 → 성남시의회
- 조례명 및 규칙명 개정
 - 경기도 성남시의회회의규칙 →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안 제16조)
 -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와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와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안 제17조)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령

성 남 시 의 회 청 원 심 사 규 칙 일 부 개 정 규 칙 안

성남시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성남시의회청원심사규칙”을 “성남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으로 한다.

제1조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4조”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0조”로 하고, “경기도 성남시의회”를 “성남시의회”로 한다.

제16조중 “경기도 성남시의회회의규칙”을 “「성남시의회 회의규칙」”으로 한다.

제17조중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와 성남시의회회의규칙”을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와 「성남시의회 회의규칙」”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성남시의회청원심사규칙</u> 제1조(목적) -- <u>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4조</u>의 규정에 의하여 <u>경기도 성남시의회</u> ----- 제16조(징 계) ----- <u>경기도 성남시의회회의규칙</u> ----- 제17조(준용규정) ----- <u>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와 성남시의회회의규칙</u> 을 준용한다.	<u>성남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u> 제1조(목적) -- 「<u>지방자치법 시행령</u>」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u>성남시의회</u> ----- 제16조(징 계) ----- 「<u>성남시의회 회의규칙</u>」 ----- 제17조(준용규정) ----- 「<u>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u>」와 「<u>성남시의회 회의규칙</u>」 을 준용한다.